

## 韓國書誌事業會規程

### 第1條 (名稱 및 設置)

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(以下 圖協이라 略稱한다)

定款 第27條 規程에 依據하여 韓國書誌事業會(以下 本會라 略稱한다)를 圖協內에 設置한다.

### 第2條 (目的)

本會는 韓國에서 刊行된 各種學術資料를 調查評價하고 體系的으로 組織하여 學術文化의 研究 및 그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### 第3條 (事業)

本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.

1. 韓國에서 刊行된 學術雜誌의 索引編纂
2. 韓國政府刊行物의 目錄編纂
3. 韓國에서 刊行된 圖書 및 非圖書資料의 調查評價 및 主題別書目編纂
4. 韓國研究에 必要한 書目編纂
5. 國內外 關係機關과의 書誌情報 및 資料交換
6. 編纂된 書誌資料의 發刊 및 頒布
7. 資料複製 韓旋
8.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

### 第4條 (他機關과의 協力)

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한 事業과 同一한 또는 類似한 事業을 他機關에서 計劃하고 遂行할 時에는 이에 協力하여 遂行토록 한다.

### 第5條 (組織)

本會는 다음의 任員으로 組繹한다.

1. 會長 1名
2. 副會長 1名
3. 委員 若干名

### 第6條 (任員의 任免)

本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이 任免한다.

#### 1. 會長

會長은 圖協會長이 된다.

#### 2. 副會長

副會長은 圖協專門委員會 委員長이 된다.

#### 3. 委員

委員은 資料種別 또는 主題分野를勘案하여 會長이 任免한다.

### 第7條 (任員의 任務)

本會의 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.

1.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여 會務를 總理한다.
2.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長有故時에는 그 任務를 代行한다.
3. 任員은 書誌資料의 評價, 書誌의 調査研究 및 編纂을 한다.

### 第8條 (諮詢委員)

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. 諮問委員은 圖協 專門委員會 分科委員長, 斯界의 專門家 및 學者中에서 會長이 委嘱한다. 諮問委員은 專門事項에 관한 諮問에 應하여 本會의 事業을 돋는다.

### 第9條 (幹事 및 調査員)

本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委員의 活動을 補佐하기 위하여 幹事 1名, 調査員若干名을 둘 수 있다. 幹事 및 調査員은 圖協職員으로서 事務局長의 內申으로 會長이 이를 任免한다.

### 第10條 (會議)

本會의 會議는 本委員會 및 委員과 諮問委員과의 合同委員會의 2種으로 하되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.

會議는 委員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議事는 出席者 過半數로서 決定한다.

#### 附 則

本規程은 圖協理事會가 議決한 1968年 9月 6日부터 施行한다.

● 찾아 간 도서관 보람 찬 내 하루

● 봄비는 도서관 희망 찬 이 겨레

● 늘어 가는 도서관 줄어 드는 사회악